[제3호 서식]

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

사 건 201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

당사자 부 성 명
주민등록번호 -

모 성 명
주민등록번호 -

협 의 내 용

1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(□에 ✓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).

자녀 이름	성별	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	친권자	양육자
	□ 남 □ 여	년 월 일 (-)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
	□ 남 □ 여	년 월 일 (-)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
	□ 남 □ 여	년 월 일 (-)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
	□ 남 □ 여	년 월 일 (-)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	□ 부 □ 모 □ 부모공동

※ 공동친권,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합니다.

2. 양육비용의 부담 (□에 ✓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)

지급인	□ 부 □ 모	지급받는 사람	□ 부 □ 모
지급방식	□ 정기금	□ 일시금	
지급액	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(한글병기: 원)	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 (한글병기: 원)	
지급일	매월 일	년 월 일	
기타	□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겠음. □ 기타		
지급받는 계좌	( ) 은행 예금주 : 계좌번호 :		

※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“기타”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,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3.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(□에 ✓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)

일 자	시 간	인도 장소	면접 장소	기타(면접교섭시 주의사항)
□ 매월 _____째 주 _____요일	시 분부터 시 분까지			
□ 매주 _____요일	시 분부터 시 분까지			
기타 □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장소, 면접장소 제한없이 수시로 면접 □인도장소, 면접장소 제한없이 수시로 면접 □자녀의 방학이나 명절을 이용하여 면접교섭권 행사				

※ 특별한 사정 없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협의이혼의사를 "불확인" 받을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.
최소한 월1회 이상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것을 권장하고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방학을 이용하거나 서신,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.

※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이혼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확인으로 처리될 수 있고,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,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의사를 "불확인"할 수 있습니다.

※ 협의서는 총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협의일자 : 201 년 월 일

부 : (인/서명) **모 :** (인/서명)

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

[※ 주의 : 예외적으로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재하세요!]

1. 직업 및 재산 현황(해당사항의 □에 ☑ 표시를 하고, 빈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.)

<table>
<tr><th colspan="5">부</th><th colspan="5">모</th></tr>
<tr><td rowspan="7">직업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□있음
종류</td><td colspan="2">직장명</td><td rowspan="7">직업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□있음
종류</td><td colspan="2">직장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월 급여액수
원</td><td colspan="2">월 급여액수
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□일용직근로자</td><td colspan="2">작업내용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□일용직근로자</td><td colspan="2">작업내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일당액 원</td><td colspan="2">일당액 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월 평균근로일수 일</td><td colspan="2">월 평균근로일수 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□없음</td><td colspan="2">희망직업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□없음</td><td colspan="2">희망직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취업예정일</td><td colspan="2">취업예정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예상소득액</td><td colspan="2">예상소득액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재산</td><td rowspan="2">주거지</td><td rowspan="2">□아파트</td><td rowspan="2">□소유</td><td>시가
원</td><td rowspan="6">재산</td><td rowspan="2">주거지</td><td rowspan="2">□아파트</td><td rowspan="2">□소유</td><td>시가
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□전세</td><td>보증금
원</td><td rowspan="3">□전세</td><td>보증금
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크기
평</td><td>□다세대/다가구주택</td><td>월차임
원</td><td rowspan="2">크기
평</td><td>□다세대/다가구주택</td><td>월차임
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□단독주택</td><td colspan="2">□단독주택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□부동산(분양권 포함)보유</td><td colspan="2">전체시가 원</td><td colspan="2">□부동산(분양권 포함)보유</td><td colspan="2">전체시가 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□주식 보유</td><td colspan="2">전체시가 원</td><td colspan="2">□주식 보유</td><td colspan="2">전체시가 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□현금 보유
(예금액)</td><td colspan="2">전체보유액 원</td><td colspan="2">□현금 보유
(예금액)</td><td colspan="2">전체보유액 원</td></tr>
</table>

2. 양육비 지출내역(학비, 학원비, 식비, 의류비, 병원비, 용돈 등 생활비용을 대략적으로 기재)

가. 현재

나. 장래

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

※ 미성년인 자녀(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,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)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**양육과 친권자결정**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※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, 협의한 내용이 **자녀의 복리**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.
※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,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**양육비부담조서**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협의사항은 '**별도의 재판절차**'를 통하여 과태료,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,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.

1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

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,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, **양육자**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,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,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(**공동친권,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**에만 바람직하며, 각자의 권리·의무, 역할,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).

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'모가 임신 중인 자'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'임신 ○개월'로 기재함으로 하고,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2. 양육비용의 부담

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.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, 자녀의 수,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.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"기타"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,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,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.

3.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

「민법」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(비양육친)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**권리**가 있고,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.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**정기적·규칙적**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,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, 면접교섭 장소, 면접교섭시 주의사항(기타 란에 기재)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4. 첨부서류(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)

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**'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'하는 경우에는** 부,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'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'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

5. 기타 유의사항

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,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